

## 공사 영어검정능력 대체에 따른 인정범위 등 세부내용

### - (영어자격기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시험의 합격결정) 제5항 준용

〈별표 3.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표〉

시험의 종류	기준점수	청각장애
토플	PBT 530점 이상	PBT 352점 이상
	IBT 71점 이상	-
토픽	700점 이상	350점 이상
토픽스	340점 이상	204점 이상
지텔프	Level2의 65점 이상	-
플렉스	625점 이상	375점 이상

### - 영어성적 인정범위

- 유효기간(2년)이 지나지 않은 국내주관사에서 확인 가능한 시험성적만을 인정하며, 접수마감일까지 발표한 국내 정기시험 성적에 한함(단,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유효기간 만료 전에 사전등록한 경우에는 5년까지 인정)(미등록자 불인정)
- 조회 확인이 불가능한 성적 및 국외응시성적은 불인정

### - 영어능력시험 청각장애 인정범위 안내

- 해당 시험의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으며, ① ‘양쪽 귀 청력 손실이 80dB 이상(기존 청각장애 2·3급)’ 이거나 ② ‘양쪽 귀 청력 손실 60dB이상 이고 어음(말소리) 분별력 50% 이하’ (진단서 제출)인 사람에 해당
- 제출서류 : 의사진단서(해당 시험 원서접수 마감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 이후 발급한 진단서, 의사소견서는 불인정)
- \* 진단서는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기 등 청력 상태를 검진할 수 있는 시설을 보유하고,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에서 발급해야 함
- \* 진단서에 반드시 포함될 내용 : 면제대상 판단기준 검사방법, 장애정도 및 유형 등에 대한 구체적 진술, 듣기점수 제출 제외 해당 여부 - 아래 예시표 참조

## <전문의 진단서 발급내용 예시>

상기인은

- ①보건복지부 장애정도 판정기준에 따라 청력 손실과 어음(말소리) 분별력을 검사한 결과,
- ②양쪽 귀 청력 손실이 60dB 이상이며, 어음(말소리)분별력이 30%인 사람으로서
- ③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영어능력검정시험 듣기점수 제외 대상 기준에 해당합니다.

-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청각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舊2·3급)으로 등록한 응시자는 진단서 제출 불필요
- \* 듣기점수 적용 제외 대상으로 신청한 시험에 한하며, 최초 1회 제출하면 매 원서접수 시 듣기점수 적용 제외 대상임을 표기하되, 진단서는 유효 기간 내의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 한해 추가 제출 불필요

### - 시험성적 사전등록

#### ○ 사전등록 안내

-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능력검정시험 중 자체 유효기간이 2년(토익, 토플, 텡스, 지텔프, 플렉스)인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시행기관으로부터 성적을 조회할 수 없어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당 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경우 반드시 유효기간 만료 전 사이버국가고시센터(인사혁신처)에 시험성적을 사전등록해야 하며, 사전등록한 능력검정시험 성적은 원서접수 시에도 등록하여야 함.
- \* 사전등록을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성적은 인정되지 않으며, 사전등록 후 원서접수 화면에서 사전등록 성적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시험 미제출로 간주됨
- 등록대상시험 : 토익(TOEIC), 토플(TOEFL), 텡스(TEPS), 지텔프(G-TELP), 플렉스(FLEX)
- 사이버국가고시센터(인사혁신처)에 사전등록된 유효한 영어성적이 있는 응시자의 경우, 인사혁신처 연계신청을 통해 성적을 등록할 수 있음.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시험의 합격결정)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6급 이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제3차 시험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2차 시험(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병합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미달된 인원의 150퍼센트의 범위(미달된 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미달된 인원에 2명을 더한 인원의 범위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추가로 제2차 시험 합격자를 결정하여 별도의 제3차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7급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3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같은 영 별표 4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각각 기준점수 및 기준등급 이상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영어과목과 한국사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미달된 인원의 150퍼센트의 범위에서 추가로 제2차 시험 합격자를 결정하여 별도의 제3차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표(제7조제1항 관련)**

시험의 종류		기준점수		
		5급 및 7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7급에 상당하는 외무영사직렬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 험은 제외한다)	7급에 상당하 는 외무영사직 렬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 시험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토플 (TOEFL)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으로서 그 실시방식에 따라 피.비.티.(PBT: Paper Based Test) 및 아이.비.티.(IBT: Internet Based Test)로 구분한다.	PBT 530점 이상	PBT 567점 이상	PBT 590점 이상
		IBT 71점 이상	IBT 86점 이상	IBT 97점 이 상
토픽 (TOEIC)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을 말한다.	700점 이상	790점 이상	870점 이상
텝스 (TEPS)	서울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 (Test of English Proficiency developed by Seoul National University)을 말한다.	625점 이상 (2018. 5. 12. 전에 실시된 시험)	700점 이상 (2018. 5. 12. 전에 실시된 시험)	800점 이상 (2018. 5. 12. 전에 실시된 시험)
		340점 이상 (2018. 5. 12. 이후에 실시된 시험)	385점 이상 (2018. 5. 12. 이후에 실시된 시험)	452점 이상 (2018. 5. 12. 이후에 실시된 시험)

지텔프 (G-TELP)	아메리카합중국 국제테스트 연구원 (ITSC: International Testing Services Center)에서 시행하는 시험(General Test of English Language Proficiency)을 말한다.	Level 2의 65점 이상	Level 2의 77 점 이상	Level 2의 88 점 이상
플렉스 (FLEX)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Language Efficiency Examination)을 말한다.	625점 이상	700점 이상	800점 이상

#### 비고

1. 위 표에서 정한 시험은 해당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및 7급 공개경쟁채용 시험(이에 상당하는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포함한다)의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부터 역산(逆算)하여 3년 이상이 되는 해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서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가 확인된 시험만 인정한다. 이 경우 그 소명방법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인사혁신처장은 위 표와는 별도로 청각장애인 응시자에게만 적용할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와 적용 대상 청각장애인의 범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